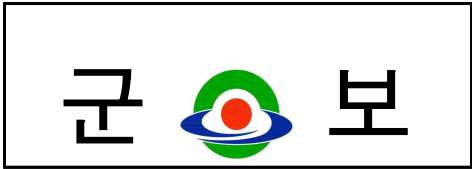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66호 2024. 10. 28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4-1497호)

회 람									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10월 28일

예 천 군



1. 개정이유

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관계인구 형성 및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

2. 주요내용

가.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 마련(안 제25조)

-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, 교육 및 각종 행사, 기부금의 모금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등

나. 기부자 예우를 위한 조문 신설(안 제26조)

- 예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및 감사제 초청, 연하장 또는

서한문 발송, 홈페이지, 소식지, 관내 신문 등 기부자 명단 공표 등
다.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로 포상 근거 마련(안 제27조)

라. 예천사랑군민 우대사항 신설(안 제28조)

○ 기부일로부터 1년간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공공시설 이용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dbc0523@korea.kr

2) 주소 : 우)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재무과

3) 팩스 : 054-650-613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(전화 : 054-650-6876)에 문

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[w](#)

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
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

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4장(제25조부터 제28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

제25조(기부 활성화 지원사업)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
2.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
3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
4.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·행사 등 참여자와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을 제작·배포하거나 시상금(상품권 포함)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26조(기부자 예우)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예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및 감사제 초청
2. 연하장 또는 서한문 발송
3. 홈페이지, 소식지, 관내 신문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
4.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7조(포상) 군수는 국내·외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예천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28조(예천사랑군민) ① “예천사랑군민”이란 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를 말한다.

② “예천사랑군민”은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부일로부터 1년간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천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제3조(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) (현행 제1항과 같음) <u>제4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</u> <u>제25조(기부 활성화 지원사업) ①</u> <u>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<u>1.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</u> <u>2.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</u> <u>3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</u> <u>4.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</u> <u>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·행사 등 참여자와 공모전 등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·배포하거나 시상금(상품권 포함)을 제공할 수</u>

<u><신 설></u>	있다. 제26조(기부자 예우)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 1. 예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 및 감사제 초청 2. 연하장 또는 서한문 발송 3. 홈페이지, 소식지, 관내 신문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4.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u><신 설></u>	제27조(포상) 군수는 국내·외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「예천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28조(예천사랑군민) ① “예천사랑군민”이란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를 말한다. ② “예천사랑군민”은 다른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부일로부터 1년간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천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